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38호 2022. 5. 20(금)

공 고

- 남원시공고 제2022-1137호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1
- 남원시공고 제2022-1138호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 남원시공고 제2022-1139호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20
- 남원시공고 제2022-1146호 남원시 공시송달공고----- 28
- 남원시공고 제2022-1155호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모노레일 및 직와이어 조성사업)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변경
인가 전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31
- 남원시공고 제2022-1157호 도로지정공고----- 36
- 남원시공고 제2022-1175호 도로지정공고----- 37

예 규

- 남원시 자치법규 발령 목록----- 38
- 남원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39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공고 제2022 - 1137호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재생센터의 설치 및 구성 규정 (안 제 7조)
- 나. 인용 조례 제명 변경 사항 반영 (안 제14조제3항)
- 다. 도시재생업무 위탁 대상 명확히 규정 (안 제 7조제6항)
- 라. 공동이용시설 관리 위탁 규정 (안 제14조의2)

3. 입법예고기간 : 2022. 5. 13. ~ 2022. 6. 2. (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남원시청 도시과
 -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6)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5. .
 제출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도 시 과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재생센터의 설치 및 구성 사항 규정 (안 제 7조)
- 나. 인용 조례 제명 변경 사항 반영 (안 제14조제3항)
- 다. 도시재생업무 위탁 대상 명확히 규정 (안 제 7조제6항)
- 라. 공동이용시설 관리 위탁 규정 (안 제14조의2)
- 마. 그 밖의 어문규정에 따른 정비 (안 제12조, 제14조제3항제4호,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5. 13. ~ 2022. 6. 2.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7조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를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단체에,”로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2조 중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협동조합기본법」”을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한다.

3. 「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조직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도시재생 관련 공유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 및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를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생략)</p> <p>② <u>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③ (생략)</p> <p>④ <u>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사무장 각 1명을 둘 수 있다</u></p> <p>⑤ (생략)</p> <p>⑥ <u>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u></p> <p>⑦ (생략)</p> <p>제12조(지원금액의 환수) <u>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u></p> <p>제14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p>	<p>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u></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 - <u>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단체에,</u> ----- -----.</p> <p>⑦ (현행과 같음)</p> <p>제12조(지원금액의 환수) ----- ----- ----- 사 <u>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u> --- ----- -----.</p> <p>제14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p>

현 행	개 정 안
<p>①·② (생략)</p> <p>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3. 「<u>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u>」 제2조의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p> <p>4. 「<u>협동조합기본법</u>」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설립·인가한 남원시 마을관리협동조합</p> <p>④ (생략)</p> <p><u><신설></u></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남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조직</p> <p>4. 「<u>협동조합 기본법</u>」----- ----- -----</p> <p>④ (현행과 같음)</p> <p><u>제14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u></p> <p>① <u>시장은 도시재생 관련 공유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u></p> <p>② <u>위탁 기간은 5년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u></p> <p>③ <u>시장은 관리 및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④ <u>그 밖에 관리위탁과 관련된 업무</u></p>

붙임

관련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군의 도시재
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군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
다.
-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 제1
항 제6호 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
다.
-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개념 및 보유성격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및 보유성격 】

- (개 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복합문화공간 등을 운영관리하며, 이러한 거점시설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국토교통부 설립인가
 - 사회적협동조합 : 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 협동조합
 - * 주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경영공시 의무, 배당금지, 잉여금의 30/100 이상 법정적립금
- (보유성격) 마중물 사업 종료 후 마을관리를 위한 주민 대표조직(대표성)으로서 주민참여에 기반한 마을관리(지역성), 도시재생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공공성)하며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한 비즈니스 활동(수익성) 추진
- (기대효과) 주민참여에 기반한 마을관리를 통하여 마을관리의 질적측면 제고,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협동의 토대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

□ 조례 개정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사업 종료 후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주민 중심의 자조조직 필요
 - 주민 중심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을 설립·운영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된 공영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를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 -1138호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련 법령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의무자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의무자의 범위 규정 (안 제16조제3항)

3. 입법예고기간 : 2022. 05. 13. ~ 2022. 06. 02.(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965), 팩스(063-620-6706), 이메일(jjanjjan063@korea.kr),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063-620-69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5. .
 제출자: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안전재난과장

1. 개정이유

관련 법령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의무자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의무자의 범위 규정 (안 제16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5. . ~ 2022. 6. .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응급의료기관 등에”를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6조(현장 응급의료소 지원) ①·② (생략)</p> <p>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u>응급의료기관</u>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16조(현장 응급의료소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u>----. ----- -----.</p>

붙임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2. 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전문개정 2010. 6. 8.]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③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 -1139호

「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관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상위법령(「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남원시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명칭 변경 (안 제2조)
- 나.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협의회의 심의사항 추가 (안 제4조제2호)

3. 입법예고기간 : 2022. 05. 13. ~ 2022. 06. 02.(20일간)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932), 팩스(063-620-6706), 이메일(wonstone@korea.kr),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063-620-69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5. .
 제출자: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안전재난과장

1. 개정이유

유관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상위법령(「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남원시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명칭 변경 (안 제2조)
- 나.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협의회의 심의사항 추가 (안 제4조제2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5. . ~ 2022. 6. .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남원지역담당관”을
“전북지부 통합방위담당관”으로 한다.

6. 350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지원대장) 또는 부대원

10.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제4조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취약지역 대비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생략)</p> <p>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원시의회 의장 2.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장 3.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4. 남원경찰서장 5. 육군 제7733부대 3대대장 6. <u>남원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u> 7. 국가정보원 <u>남원지역담당관</u> 8. 남원소방서장 9. 남원시 재향군인회장 10. <u>전주보훈지청장</u> 11.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p>③ (생략)</p> <p>제4조(협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p>제2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현행과 같음) 6. <u>350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지원대장) 또는 부대원</u> 7. ----- <u>전북지부 통합방위담당관</u> 8. 9. (현행과 같음) 10. <u>전북동부보훈지청장</u> 11. (현행과 같음)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협회의 심의사항)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가. ~ 사.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p> <p>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p> <p>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p> <p>라. 작전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예비군 출동 시 차량 및 급식 지원</p> <p>마. 예비군 급식 및 의료 지원, 무기수송차량 및 부족향방물자 지원대책</p> <p>바. 예비군 임무수행지역 KT유선 지원대책(중요시설, 목진지 등)</p> <p>사. 작전에 필요한 시설 지원(체육관, 학교 등)</p> <p><u><신 설></u></p> <p>3. ~ 5. (생략)</p>	<p><u>아. 취약지역 대비책</u></p> <p>3. ~ 5. (현행과 같음)</p>

붙임

관련법령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중사태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 대책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⑦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1. 29., 2018. 12. 24.>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남원시 공고 제2022 -11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5. 18. ~ 2022. 6. 2. (15일간)
2. 공고장소 :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소유자 현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 : 2022.5.16.)	진○완	남원시 동총동 360-15	건축물 부존재	남원시 동총동 360	주1 목조 주택 26㎡ 주1 ब्ल럭 주택 18㎡

4.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16

남 원 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전라북도 남원시 건축과 건축지원담당
 - 연락처 : 063) 620-6597

남원시 공고 제2022 - 1155호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모노레일 및 쥘와이어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인 『모노레일 및 쥘와이어 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의 열람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22년 5월 20일

1. 사업의 종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 가. 명 칭 : 모노레일 및 쥘와이어 조성사업
 -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남원시 어현동 37-12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기정 9,946㎡ ⇒ **변경 8,56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원테마파크 주식회사 대표 이용운
 - 나. 주 소 : 기정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5, 6층(별양동) ⇒
변경 전라북도 남원시 양림길 58-13(어현동)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5. 열람기간 :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

7.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편입 토지 조서>

○ 모노레일

연 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동	지번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503,190	8,972	-934	8,038						
1	노암동	1	전	813	5	-1	4	남원시					
2	노암동	2-3	전	821	4	-2	2	남원시					
3	노암동	3	전	8,666	65	-14	51	남원시					
4	노암동	10	답	11,356	1	-	1	남원시					
5	노암동	419	전	212	95	-73	22	남원시					
6	노암동	421-1	답	1,884	7	-2	5	남원시					
7	노암동	421-2	답	1,983	187	-58	129	남원시					
8	노암동	422-1	답	7,157	391	-32	359	이*선	하*동 1*2				
9	노암동	433	전	1,646	23	6	29	남원시					
10	노암동	438	전	793	4	53	57	남원시					
11	노암동	810-10	구	1,096	35	-6	29	국(건 설부)					
12	노암동	810-15	구	4,901	567	-65	502	국(건 설부)					
13	노암동	828	도	126	7	-5	2	국(건 설부)					
14	노암동	829	구	179	9	-6	3	국(농림 축산식 품부)					
15	노암동	산9-2	임	22,847	771	-123	648	남원시					
16	노암동	산10	임	21,093	119	-27	92	남원시					
17	노암동	산10-5	도	100	7	-1	6	남원시					
18	노암동	산10-7	임	10,317	445	44	489	남원시					
19	노암동	산10-8	임	2,437	41	-10	31	남원시					
20	노암동	산11	임	2,571	204	-37	167	남원시					
21	노암동	산11-1	임	2,691	115	-23	92	남원시					
22	노암동	산11-2	임	5,151	200	-62	138	남원시					
23	어현동	37-7	도	5,821	79	-79	-	남원시					

연 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동	지번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4	어현동	37-12	원	17,017	1,321	125	1,446	남원시					
25	어현동	37-20	원	685	279	-79	203	남원시					
26	어현동	37-21	원	1,055	79	3	82	남원시					
27	어현동	37-74	원	3,054	141	-13	128	남원시					
28	어현동	37-79	원	1,881	267	-39	228	남원시					
29	어현동	37-99	원	267,512	16	55	71	남원시					
30	어현동	37-111	도	20,099	232	-154	78	남원시					
31	어현동	37-153	원	49	13	20	33	남원시					
32	어현동	37-158	원	8,169	541	-50	491	남원시					
33	어현동	37-176	원	220	3	-3	-	남원시					
34	어현동	37-177	원	132	3	-3	-	남원시					
35	어현동	37-178	원	63,622	1,626	-329	1,297	남원시					
36	어현동	37-187	원	836	95	-13	82	남원시					
37	어현동	37-190	원	283	18	-17	1	남원시					
38	어현동	산88-2	임	2,123	867	112	979	남원시					
39	어현동	산88-3	도	918	79	-27	52	남원시					
40	어현동	산88-5	도	874	11	-2	9	남원시					

○ **짚와이어**

연 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동	지번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29,063	974	-443	531						
1	노암동	1	전	813	465	-163	302	남원시					
2	노암동	422-1	답	7,157	102	-	102	이*선	하*동 1*2				
3	노암동	산10	임	21,093	407	-280	127	남원시					

◎ 남원시 공고 제 2022 - 1157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 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9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22-23	남원시 운봉읍 산덕리 908, 907(답), 917-1(대)	조*희	2022-건축과- 건축신고-106	15.75	0.87	15	917-1	15	조*희

◎ 남원시 공고 제 2022 - 1175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3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21-61	남원시 동충동 128, 129-2(대)	유*미	2021-건축과- 건축신고-329	15.82	1.7	26.7	128	26	유*미
							129-2	0.7	강*경

남원시 자치법규 발령 목록

- 총 1건 (예규 1) -

□ 예규 : 1건

발령 번호	예규명	제·개 정 내 용	비고
32	남원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가. 제정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취득여부 조사·확인 및 예외 취득 신고 방법 규정(안 제4조~제7조) 다.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안 제8조) 라. 부동산 유관부서 및 부서별 취득제한 범위(별표)	

남원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5월 20일

남원시 예규 제 32 호

남원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남원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3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2. 제1호의 상급 감독자(「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1호의 제한부서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상급 공무원

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남원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③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

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2. 제한대상자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및 제6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제2조 및 제4조 관련)

연번	실·국명 (소속기관명)	부서명	주요 직무 내용	제한 부동산의 범위
1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관련시설 등의 개발·조성	직무과 관련된 부동산
2	자치행정국	관광과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지정	
3	자치행정국	교육체육과	교육·체육시설의 개발·조성	
4	경제농정국	기업지원과	투자유치지구 지정 및 개발	
5	경제농정국	농정과	농지전용·협의·신고 등 관리	
6	경제농정국	농촌활력과	농촌생활환경 종합정비	
7	경제농정국	원예산업과	허브육성 클러스터 구축, 허브밸리특구 관리	
8	경제농정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계획, 산지전용, 도시숲 조성	
9	안전건설국	도시과	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 도시가로망 정비계획	
10	안전건설국	건설과	읍·면지역 시도,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	
11	안전건설국	환경과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12	안전건설국	교통과	교통영향평가, 철도·삼도·궤도, 주차장 설치 종합계획	
13	안전건설국	건축과	건축행정 종합계획, 주택건설 사업계획	
14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	공공하수도 기본 및 중장기계획	
15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상수도 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 직제규정 :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